

# 지능정보사회 대비 데이터 법제도 개선 방향

설성호·신현문·김병일



본 보고서는 ETRI 기술정책연구본부 “공정·상생의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송통신정책 연구”를 통해 작성된 결과물입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Contents

<b>Executive Summary</b>	<b>1</b>
<b>I. 지능정보사회 도래와 법제도 개선</b>	<b>5</b>
1. AI 기술발전과 지능정보사회의 도래	5
2. 산업 발전과 보호가 조화된 법제로의 개선 필요	6
3. 연구 목적 및 범위	7
<b>II. 국내 데이터 3법 하위법령 제·개정과 쟁점 이슈</b>	<b>9</b>
1. 데이터 3법 개정 의의와 하위법령 제·개정 추진 과정	9
2. 하위법령 제·개정 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이슈	12
<b>III. 해외 주요국의 법제도 분석</b>	<b>19</b>
1. European Union	19
2. 미국	31
3. 일본	35
<b>IV. 국내 데이터 법제도 향후 과제와 개선 방향</b>	<b>40</b>
1. 데이터 3법 재개정의 필요성과 향후 추진과제	40
2. 추진과제별 개선 방향	41
3. 연구 의의 및 한계점	47
참고문헌	49





## Executive Summary

###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와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 최근 들어 급속한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AI는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근본적으로 개선 시킬 수 있고 전 산업에 응용될 수 있는 기반 기술임
- AI 기술의 응용 확산은 우리가 속한 경제·사회를 크게 변화시켜 새로운 지능정보 사회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AI 기술을 여러 산업 분야의 제품·서비스들에 폭넓게 적용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병목은 양질의 학습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는 문제임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법제도를 산업발전과 보호 간에 조화된 형태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 2020년 1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 3법 개정(안)은 산업발전과 보호 간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차적 산물임
-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는 시행령을 비롯한 하위법령들의 제·개정 작업 추진과 위상이 강화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출범 등 매우 굵직한 뉴스들이 이어짐
-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연구는 개정된 데이터 3법 및 하위법령을 실무적으로 시행해가면서 생겨나는 유권해석에 대한 사항과 남아있는 법제도 향후 과제들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보고서는 후자에 초점을 맞춤

### 국내 데이터 3법 개정 의의, 하위법령 제·개정 및 쟁점 이슈

- 이를 위하여 먼저 2020년 한해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데이터 3법 개정 의의, 하위법령 제·개정 추진 과정 및 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이슈들에 대하여 서술하였음
- 데이터 3법 개정의 주요 의의로는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관련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위원회 중심으로 일원화하였음. 이외에도 개인정보 개념의 명확화,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등도 주목할 만한 변화임
- 하위법령 제·개정 추진 작업은 시행령 등은 위상이 강화된 개인정보보호위 출범 시기에 맞춰 확정되었고 가이드라인, 법해설서 개정 작업 등은 연말까지 지속됨



- 본 보고서에서는 파급력이 크고 쟁점이 많았던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된 이슈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 데이터 3법의 법적체계는 다수의 법학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법이고 신용정보법은 특별법의 위치에 있는 이원화된 체계로 이해하고 있지만, 이견이 남아있는 상태임. 이것이 완전히 해소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가명처리의 정도 및 범위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0.09.24.)이 확정되기까지 불확실성으로 인한 일시적 논란이었으며 ‘과학적 연구 목적’의 범위에 대하여는 폭넓게 해석하는 쪽으로 입장이 일찍 정리되었음
- 양립가능성에 관한 시행령 제14조의2는 초안 발표 이후, 가장 논란이 심각했던 조항으로 중국에는 산업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GDPR과 유사하게 종합고려 요건으로 수정되었음
- 결합 및 전문기관에 대한 부분도 시행령 초안에서는 제한이 많았지만, 많은 논란 끝에 상당 부분 제한이 완화되는 형태로 시행령이 확정되었음

## 해외 주요국의 법제도 분석

-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현대화 과정에서 주요 레퍼런스로 활용되고 있는 유럽의 GDPR에 대하여는 주요 특징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주요 주제별로 상세히 분석하였고 GDPR 시행 2주년을 맞아 자체적으로 발간한 평가보고서 등에 대하여도 그 내용을 분석·정리하였음
- GDPR 개요에서는 구성 체계 및 적용 범위, GDPR 제정의 주요 의의, 감독기관 및 원스톱숍 메커니즘,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으로 나누어 서술하였음
- GDPR에 대한 주요 주제별 세부 내용은 가명처리 정의 및 관련 규정, 양립가능성 규정, 동의의 개념, 개인정보 이동권과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 반대권, 회원국 입법재량 사항들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GDPR은 매우 방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데이터 3법 개정(안)과 향후 개선과제에 연관되는 주제들을 주로 다루었음
- 최근에 EU집행위원회는 GDPR 시행 2주년을 맞아 평가보고서를 발간함. 그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EU 내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려는 목표달성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세부적으로는 개선해야 할 점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 이외에 유럽사법재판소는 EU-US Privacy Shield 협정이 무효라고 판결하였는데, 이 판결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그 진행 과정과 의

의에 대하여 서술하였음

- 한편, 미국은 우리나라, EU와는 달리 섹터별로 패치워크된 법제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며 연방차원에서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 제안활동들이 나타나고 있음
- 미국에서 가장 현대화되고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은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임. EU GDPR과 유사점도 많지만 차이점도 상당히 많음. 이에 EU GDPR과의 비교를 시도한 연구들도 출현하고 있으나 아직은 충분하지 않아 본 보고서에서는 비교보다는 주요 내용을 서술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은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위반시 민사벌을 부과하고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를 중시하는 특징이 있음
- 일본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현대화시키기 위하여 2015년에 법을 대폭 개정하였고 3년 동안의 시행결과를 검토하여 2020년에 또다시 개정하였음.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2015년도 개정 및 2020년도 개정은 많은 주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데이터 3법 개정(안)과의 비교나 향후 개선 과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부 주제에 국한하여 분석하였음.
- 2015년 개정법의 주제 중에서는 익명가공정보의 개념 및 익명가공정보취급사업자의 의무 신설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동의 및 고지제도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대응에 대하여도 살펴보았음
- 2020년 개정법의 주제 중에서는 혁신 촉진을 위한 ‘가명가공정보’ 도입 배경과 그 개념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개인관련정보’의 개념 도입 및 제3차 제공 동의 확인 의무화에 대하여도 고찰하였음.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어떻게 강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음

## 국내 데이터 법제도 향후 과제와 개선 방향

- 국내 데이터 3법,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은 많은 문제점이 있어 향후 재개정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 소관부처도 개인정보보호법 재개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참작하여 향후 추진과제들에 대한 개선방향 모색이 필요한 상황임
- 다만,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 일부 수정되었다는 뉴스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살펴볼 때 동의 및 고지제도 개편, 데이터 이동권 등 정보주체 권리의 법제화 방안 검토, 국외이전 관련 법제 정비는 추진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사료됨



- 이외에도 그동안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되었거나 저자들의 시각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제재방식의 개선과 특례규정의 정비까지 본 보고서에서는 총 5가지 과제를 향후 추진과제로 보고 그 과제들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음
- 이 5가지 과제에 대한 개선 방향 제시는 각 과제에 대하여 파편적인 형태로 일부만 언급하고 있는 기존 자료들에 대한 문헌 분석과 함께 GDPR 등 선진국 법제 분석 결과를 투영하여 저자들의 시각에서 이를 종합화한 것임
- 저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동의제도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며 동의제도 개편과 함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 등 합법처리 기준 전반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옵트 아웃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도로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의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임
- 데이터 이동권은 도입의 타당성이 높다고 사료되며 신용정보법의 관련 조문과 기존 연구들을 잘 활용하여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을 신설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됨. 다만, 데이터 이동권 대상 개인정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가장 큰 잠재적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섹터간의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 반대권 도입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신용정보법과의 정합성 해소 차원에서 대응권 정도는 보장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반대권 도입시에는 그 권리의 대상 및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개정법에서도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형사벌 위주의 제재방식은 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민사벌이나 행정벌 위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함. 만약 형사벌 위주의 체계에 대한 대폭적인 개편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서 양벌 규정의 완화만이라도 고려해볼직함
- 법률의 일반적 적용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가급적 특례를 줄이고 일반조항화할 필요가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세부연구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저자들의 관점에서 개선안을 제시하였음
- 국외이전 관련 법제 정비는 역외규정을 신설하고 강한 형태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표준계약 등 다양한 방안으로 국외 이전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 이를 위해서는 EU GDPR 및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참고한 국외 이전 사례연구가 우선적으로 필요

## 1 AI 기술발전과 지능정보사회의 도래

- 최근 들어 급속한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AI는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근본적으로 개선 시킬 수 있고 전 산업에 응용될 수 있는 기반 기술임
  - 지난 십여 년간 진전된 기계학습 분야 특히 딥러닝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스토리지 용량 확대와 맞물려 이루어짐으로써 AI의 성장과 영향력이 급속도로 높아짐
  - 여러 가지 측면에서 AI의 확산은 1990년대 컴퓨터 확산이나 2000년대의 인터넷 액세스 확대와 유사하다고 평가되고 있음
    - \* ITU(2018) 보고서는 전 세계 AI 도입의 경제적 효과가 2030년까지 13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PwC(2017) 보고서는 2030년까지 15.7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 AI 기술은 거의 모든 산업들에 적용될 수 있음(즉, AI+ X). OECD 보고서(2019)는 10대 어플리케이션 분야의 AI 활용 동향과 이슈, 주요 사례들을 정리·제시하였는데 특히 금융과 자율주행차 분야가 AI 기술 채택에 있어 가장 앞서 있다고 언급함
    - \* OECD 보고서가 정리·제시한 10대 AI 어플리케이션 분야 : ①자율주행차 포함 운송, ②농업, ③금융서비스, ④마케팅/광고, ⑤과학, ⑥헬스, ⑦범죄/정의, ⑧안전, ⑨공공행정, ⑩AR 및 VR
- 이와 같은 AI 기술의 응용 확산은 우리가 속한 경제·사회를 크게 변화시켜 새로운 지능정보사회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경제 전반에 걸쳐 데이터와 AI의 유기적인 융합이 촉진되어 모든 산업에서 혁신적인 체질 변화가 일어날 것임. 특히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 생산함수의 투입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 알파고(AlphaGo) 쇼크가 있었던 2016년을 기점으로 인류사회 변천 패러다임이 정보화사회에서 지능정보사회로 전환되기 시작함
    - \*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2016)'에서는 지능정보사회를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통해 생성·수집·축적된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 결합한 지능정보기술이 경제·사회·삶의 모든 분야에 보편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발전하는 사회'로 정의
-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는 경제·사회 전반에 엄청난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사전 대비가 매우 중요함
  - 지능정보사회 도래의 긍정적인 효과로는 효율성 개선, 산업간 융합 촉진, 사회 문



제 해결 능력 강화 등이 거론되며 부정적인 측면에는 일자리 문제, 윤리 문제, 안전성 문제 등이 있음

- 2018년 1월 발표된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서는 국가정보화 사업의 정책 방향을 전산화, 정보화에서 지능화로 전환하겠다는 기본방향을 제시함
- 2019년 12월에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인공지능 국가전략’은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기회를 극대화하고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 대책임

## 2 산업 발전과 보호가 조화된 법제로의 개선 필요

- AI 기술을 여러 산업 분야의 제품·서비스들에 적용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병목은 양질의 학습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는 문제임
  -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와 충돌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관리·처리에 상당한 제한이 따름
  - 축적된 데이터가 거의 없는 혁신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데이터를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데 오픈 데이터 정책 추진 및 데이터 거래 플랫폼 런칭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필요한 데이터 확보에 애로가 큼
    - \* 인공지능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방법(이준배 발표, 2020.10.23.) : ① 직접 수집, ② 타사 데이터, ③ 데이터 거래 플랫폼, ④ 공개 데이터
    - \* 오픈 데이터 정책 : 공공부문이 보유한 데이터에 민간이 자유로이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정책으로 정부 및 공공부문의 효율성 개선, 민주주의 강화 목적으로 추진됨
    - \* 데이터 거래 플랫폼 :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하여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으로 금융 데이터 거래소(FinDX), 데이터 스토어, SKT 빅데이터 허브 등이 운영 중
  - 기업이 내부에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데이터 자체에 내포된 문제가 많아 쓸만한 데이터를 골라 가공·축적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
    - \* 좋은 데이터 세트의 조건(이준배 발표, 2020.10.23.) : ① 표준화, 구조화를 거친 정제성, ② 기계가 판독 가능한 형식(machine-readable format), ③ 인공지능 모형 목표에 부합하도록 설계, ④ 활용이 용이한 라이선스 부여
- 데이터·AI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이용제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특히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된 법제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
  -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법률제정 이래로 줄곧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전제로 활용이 가능한 옵트인(opt-in) 방식 위주로 구성되어왔으며 전체적으로는

- 보호에만 치중함으로써 데이터·AI 경제 시대에는 부합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음
- 이와 같은 배경하에 유럽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사례 등을 참조하여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된 법제로 개선 시키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요구되었음
    - \* GDPR : 8년간의 준비와 협상을 통한 산물이며 2년간의 이행기를 거쳐 2018년 5월 25일에 발효된 유럽의 일반데이터보호규칙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데이터 보호지침 95/46/EC를 대체함. GDPR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 이와 동시에 EU 역내에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
  - 2018년 11월에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되어 2020년 1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 3법 개정(안)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차적 산물임
    - \*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최한 2차('18.02월) 및 3차('18.04월)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에서 산업계, 시민단체, 정부 간에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정법률(안)이 마련됨

**표 1** 데이터 3법 개정(안) 발의 및 주요 내용

의안명	발의자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6621)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18.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명정보 개념 도입 &amp; 가명처리 허용 범위 규정</li> <li>• 가명정보의 결합 근거 마련</li> <li>• 양립가능성 개념 도입</li> <li>•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li> <li>• 개인정보보호체계(감독기구, 규정)의 일원화</li> </ul>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6622)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18.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li> </ul>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6636)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18.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명확화</li> <li>• 신용정보산업 규제체계 정비</li> <li>•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li> <li>• 정보보호 내실화와 정보주체 권리 강화</li> </ul>

### 3 연구 목적 및 연구 범위

- 본 보고서에서는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차적 산물인 표1의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향후에 보다 선진화된 법으로 발전하기 위해 남아있는 과제들의 개



선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음

-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연구는 개정된 데이터 3법 및 하위법령을 실무적으로 시행해가면서 생겨나는 유권해석에 대한 사항과 남아있는 법제도 과제들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일로 구분되는데, 본 보고서는 후자에 초점을 맞춤
- 이를 위하여 II장에서는 먼저 2020년 한해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표 1의 데이터 3법 개정 의의, 하위법령 제·개정 추진 과정 및 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이슈들에 대하여 서술하였음
  - 추진 과정은 정부 정책 동향을 시간대별로 요약하였으며 쟁점 이슈는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된 대표적인 이슈들을 대상으로 학술자료 및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분석·정리하였음
- 향후 과제의 개선 방향 도출을 위해서는 선진국 법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므로 III장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법제도를 분석·제시하였음
  -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현대화 과정에서 주요 레퍼런스로 활용되고 있는 유럽의 GDPR에 대하여는 주요 주제별로 상세히 분석하였고 GDPR 시행 2주년을 맞아 자체적으로 발간한 평가보고서 등에 대하여도 그 내용을 분석·정리하였음
  - 미국은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을 중심으로 법제를 분석하였으며 일본은 2015년도 개정 및 2020년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하여 분석하였음
- IV장에서는 향후 과제 5가지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을 제시하였음
  - 국내 데이터 법제도의 향후 과제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① 동의 및 고지제도 개편, ② 데이터 이동권 등 정보주체 권리 법제화, ③ 형사벌 위주의 제재방식 개선, ④ 특례규정의 정비 및 일반규정화 및 ⑤ 국외 이전 관련 법제 정비의 5가지라고 판단하였음
  - 이 5가지 과제에 대한 개선 방향 제시는 각 주제에 대하여 과편적인 형태로 일부만 언급하고 있는 기존 자료들에 대한 문헌 분석과 함께 GDPR 등 선진국 법제 분석 결과를 투영하여 저자들의 시각에서 이를 종합화하였음
  - 마지막 절에서는 기존 문헌 대비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제시하였음

II

국내 데이터 3법 하위법령 제·개정과 쟁점 이슈

1 데이터 3법 개정 의의와 하위법령 제·개정 추진 과정

가. 데이터 3법 개정의 주요 의의

- 첫째, 개인정보보호법은 옵트인 방식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치중하면서도 가명정보 개념 도입 및 가명처리를 허용하고 양립가능성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결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가명정보 개념 도입 및 가명처리 허용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인 경우에는 동의없이 가명처리를 통해 데이터 활용이 가능
  - 양립가능성 규정 도입 :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인 경우에는 동의없이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게 허용
    - \* 양립가능성 규정의 도입으로 서비스 제공 단계별로 추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기업의 불편 해소 및 정보주체의 불필요한 동의에 따른 피로감 해소 등이 가능(장준영 발표, 2020.05.14.)
  - 가명정보 결합 근거 마련 :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은 기술적, 물리적 적정 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안전하게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반출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
- 둘째, 여러 부처(행정안전부/방통위/금융위/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 관련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로 호칭) 중심으로 일원화하였으며 개보위의 실질적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시킴
  - 기존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상이 강화되었음
  - 개보위의 일부 업무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국무총리 행정감독권)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독립성을 확보하려 하였는데 이는 GDPR 적정성 평가 등을 고려한 취지로 보임
- 셋째,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맞추어 신용정보에 관한 특별법 체제로 개편하면서 동시에 신용정보산업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등 전면 개정하였음
  -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명확화 : 가명정보 개념 도입 및 가명처리 허용, 양립가능성 규정 도입, 정보집합물 결합 근거 마련 등



- 신용정보산업 규제체계 정비 : 신용조회업의 규제체계(허가단위)를 개편하여 보다 세분화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즉,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을 새로이 도입함
- 이외에 개인정보(또는 개인신용정보) 개념의 명확화, 개인정보처리자(또는 신용정보 회사 등)의 책임성 강화 등도 큰 의미를 가짐
-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되나, 익명정보는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음(제2조 1호 다목 및 제58조의2)
- 또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는 없지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기존 법에서는 결합가능성만을 고려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제2조 1호 나목의 ‘다른 정보의 입수가능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 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범위를 좁힘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개인정보보호법(2020.08.05. 시행)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lt;개정 2014. 3. 24.&gt;</p> <p>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lt;개정 2014. 3. 24., 2020. 2. 4.&gt;</p> <p>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p> <p>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p> <p>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p>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p>
	<p>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p>
	<p>제58조의2(적용제외) 이 법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본조신설 2020. 2. 4.]</p>

## 나. 하위법령 제·개정 추진 과정

- 데이터 3법 개정 후속 조치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2020.01.20.) : 데이터 3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향후 추진될 정부의 주요 계획들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법률 구체화를 위한 하위 행정입법(시행령, 고시, 가이드라인, 법해설서) 개정 추진 일정 소개
  - EU 방문 등 대외협력 활동을 통해 GDPR 적정성 결정의 조속한 추진을 다짐
  - 개보위 출범 지원 약속 : 예산 및 조직 이관, 위원회 구성 등
-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2020.03.31.) :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간에 한차례의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함
  - 입법 예고 기간 : 3월 31일~5월 11일
  -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 개최(2020.04.29) : 산업계는 시행령의 모호한 규정과 법적 취지 위배를 지적하면서 관련 산업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
- 데이터 3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안) 발효 시점까지의 주요 동향 :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초안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토론과 노력이 전개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상당 부분 수용됨
  -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데이터 3법 관련 금융분야 간담회(5월 14일) 및 정보통신분야 간담회(5월 28일)를 개최하여 중재를 시도
  - 행안부는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을 행정 예고(2020.06.03.)
  -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선하겠다고 언론에 표명(2020.06.16.)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2020.06.26.)
- 데이터 3법 개정(안) 발효로 출범한 개보위의 최근 활동 : 출범 이후 고시 의결, 가이드라인 마련, 법 해설서 개정안 마련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데이터 3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안)은 8월 5일부로 시행됨(단, 신용정보법 시행령은 8월 12일부 시행) : 개인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논란이 지속되어온



제14조의 2를 개선하여 시행

-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상이 격상된 개보위의 9인 위원에 대한 인선 완료 및 윤종인 초대위원장 취임(2020.08.05.)
-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의결(2020.08.2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통합본(가명처리편+가명정보 결합·반출편) 확정 공개(2020.09.24.) : 이 가이드라인은 분야별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은 일반적인 산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됨
- 보건복지부와 개보위는 공동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확정 공개(2020.09.25.) : 이 가이드라인은 최초의 분야별 가이드라인에 해당함
- 교육부와 개보위는 공동으로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확정 공개(2020.11.26.)
-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삼성SDS와 통계청을 지정(2020.11.27.)
-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발간(2020.12.02.)

## 2 하위법령 제·개정 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이슈<sup>1)</sup>

### 가. 데이터 3법의 법적 체계

- 개정 이전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오프라인에서 수집·이용되는 모든 개인정보’ 만을 대상으로 규율함으로써 일반법의 위치에 있지 못하였음
- 이에 반해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규율하였고 신용정보법은 주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개인신용정보를 대상으로 규율하였음. 온라인을 통해 수집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이 중첩 적용되었음
- 개정 이후 다수 법학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법, 신용정보법이 특별법의 위치에 있는 이원화된 체계라고 이해하고 있음. 다만, 이견이 남아있는 상태임
- 다수설 : 개인정보보호법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수집·이용되는 모든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규율하며 신용정보법은 주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개인신용정보만을 대상으로 규율하는 체계임

1) 본 보고서는 하위법령 제·개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이슈 중에서 특히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된 대표적인 쟁점 이슈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 제2절 : 신용정보법은 금융기관 및 일반 상거래 기업의 개인신용정보를 대상으로 규율하며 특별법이기에 때문에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 적용.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신용정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임직원 정보·영상정보·거래 상대방이 아닌 자의 정보·상품 소개 목적의 고객정보 등만을 대상으로 규율(김진환 발표, 2020.05.14.)

\* 이와같이 제2절이 존재할 수 있는 여지는 신용정보법 제2조 7호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한 정의가 과거에는 열거주의였다가 개정법에서 포괄주의로 바뀌면서 생겨났음

-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이 원래 의도한 가치와 효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일반 산업계 Vs. 금융계로 나누어 적용 대상을 좁게 해석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신용정보법을 재개정하면 됨(김진환 발표, 2020.05.14.)
- 그러나, 최근 시행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별표 1]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관한 신용정보의 범위’에는 ‘주문내역정보’(즉, 쇼핑정보)가 포함되어 온라인 쇼핑몰 업체가 크게 반발한 사건이 발생(이데일리, 2020.08.20.). 이는 일반 산업계와 금융계로 이원화하여 규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정부부처의 해결 의지 부족을 보여줌

## 나. 가명정보 처리 허용 범위<sup>2)</sup>

- 가명처리의 정도 및 범위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의2호에 의하면 가명처리의 합법 기준은 개인정보의 일부 삭제 또는 일부·전부의 대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추가정보 없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임
- 그러나,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우려와 기대가 반복되었음. 법률상으로는 개인정보의 삭제 및 대체 방법이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임
- 시행령 초안에는 가명처리 범위에 대하여 법률을 구체화한 규정이 전혀 없었으며 결과적으로는 복잡하고 방대한 실무작업을 거쳐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통합

2) 채성희 발표(2020.05.14.)에 따르면 가명정보 처리의 허용 범위와 그 한계에 관한 주요 쟁점 목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됨 : ① 가명처리의 정도 및 범위, ② 추가정보의 의미와 범위, ③ ‘과학적 연구’ 목적의 범위, ④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⑤ 민감정보의 포함여부 및 민간정보의 취급. 본 보고서에서는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논쟁이 치열했던 ①과 ③만 서술하기로 함



본이 최종 확정(2020.09.24.) 되기에 이름. 가이드라인이 확정되기 이전에 산업계와 학계는 가명처리의 정도 및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감과 기대하는 방향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하였음. 대표적인 의견은 데이터 3법 시행령 토론회(2020.04.29.)에서 산업계 패널이 제시한 다음과 같은 의견임

“가명처리를 어디까지 하면 되는지가 관건임(직접식별자/준식별자/속성자). 하나의 잣대로만 획일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려움. 예를 들어 신용평가사와 지자체처럼 서로 다른 비즈니스 상황에 맞게 기준을 설정해주지 않으면 활용하기가 어려움. 업종별로 데이터 특성이 달라서 안되는 것에 대한 풍부한 사례를 만들어서 기업들이 공유할수록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기업들이 책임을 지고 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고 생각됨”

- 이와같은 주장은 ‘가명정보 처리 관련 가이드라인 작성 계획’(2020.06.11.)이 예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작성하고 필요시 분야별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발간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용되기 시작하였고, 최종적으로는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2020.08.06.)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0.09.24)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020.09.25.)을 통해 결실을 맺음
- ‘과학적 연구’ 목적의 범위 : 개인정보보호법의 가명정보 처리 목적 범위를 신용정보법과 동일하게 해석해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
  - 2월 17일 행안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시민단체 측은 ‘과학적 연구’ 범위를 학술연구로만 제한할 것을 주장하였고(즉, 산업적 연구는 제외), 신용정보법의 허용 범위가 너무 넓으므로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그러나, 학술계는 다수 연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이 명문화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가명정보 처리 목적 범위를 신용정보법과 동일하게 해석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입법 취지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에 잘 나와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621) 제안이유 중에서 발췌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수범자의 혼란을 줄이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도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의무부과 및 위반 시 과징금 도입 등 처벌도 강화해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관련 산업의 경쟁력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서는 ‘과학적 연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함 : 과학적 연구는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하며 자연과학, 사회과학,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함. 여기서 과학적 방법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 가능한 질문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을 의미함. 과학적 연구는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 연구, 응용 연구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위해서도 수행이 가능하며 민간투자 연구, 기업 등이 수행하는 연구도 가능함

#### 다. 양립가능성 규정

- 양립가능성은 데이터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새로이 도입된 규정으로 하위법령 제·개정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반발과 논쟁을 촉발한 이슈였음
- 즉, 다음과 같이 시행령 개정(안) 초안이 법률 개정(안)에 비해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면서 현실적으로 산업 발전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킴

(개정) 개인정보보호법(2020.08.05. 시행)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02.04.>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 등)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4항에 관하여는 ‘이용’을 ‘제공’으로 본다.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추어볼 때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가능할 것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02.04.>	3.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가명처리를 하여도 추가적 이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명처리하여 이용할 것 [본조신설]

- 시행령 개정(안) 초안의 제14조의2에서는 각호에 규정된 사항들을 모두 충족하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현실에서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 것이라는 산업계의 문제 제기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짐. 2020년 2분기에 많은 신문기사들이 이러한 문제제기를 언급



- 게다가 학계에서도 문제점 지적이 이어졌는데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에서 개최한 제71회 세미나에서는 토론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지적이 나옴 : “시행령 개정안은 너무 엄격한 요건으로 되어 있어 위임입법을 위반한 측면이 있는 듯하며 무리한 시행령으로 보임. 제1호의 상당한 관련성 요건은 법률에서 규정한 합리성 연관은 서로 다른 개념임”, “신용정보법은 EU GDPR처럼 양립가능성 판단시 고려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한 사항을 모두 충족하라는 방식은 아님. 따라서 개인정보법 시행령을 신용정보법 규제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바람직”
- 이러한 논쟁의 영향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받아들여 행정안전부는 각호(각호는 다음과 같이 문구를 수정)를 종합 고려하는 요건으로 수정하였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이 확정됨
  - 제1호의 “상당한 관련성”은 “상당한”을 삭제하여 “관련성”으로 수정
  - 제2호의 “수집한 정황과 처리 관행”은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으로 수정
  - 제3호의 이익침해 금지 대상에서 “제3자의 이익”을 삭제
  - 제4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는 가명처리 이외의 방법도 선택할 수 있도록 수정

## 라. 결합 및 전문기관

- 시행령 초안의 제29조의2(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음.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절차(안)에 대한 이해는 그림 1을 참조

**그림 1**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절차



\* 자료 출처: 관계부처 합동, 데이터 3법 시행령 입법예고\_정책설명자료, 2020.03.31.

- 가명정보를 결합하려는 기관은 전문기관에 결합을 신청하고 전문기관은 개보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결합을 수행.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결합에 필요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원 가능

- 전문기관이 가명정보를 결합해주면 결합신청자는 전문기관 내 설치된 안전한 공간에서 결합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음. 분석공간에서 결합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분석공간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결합된 가명정보는 전문기관의 안전성 평가 및 승인을 거쳐서 전문기관 외부로 반출할 수 있음

- 시행령 초안 제29조의2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았음

- 첫째, 반출 이전에 전문기관 내 분석공간에서만 결합된 정보를 분석하도록 제한함. 이는 다음과 같이 데이터 3법 시행령 토론회에서 산업계 패널들이 주장한 문제 제기에서 잘 확인됨

“결합과 관련하여 분석하는 공간을 따로 지정해 놓은 것도 문제임. 반출하기 전에 분석하는 공간을 전문기관 내에서만 하도록 제한할 경우에는 해당하는 장소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동하거나 대기하는 시간 등 불편이 너무 큼”

“데이터 반출과 관련하여 기업들은 데이터를 기업 내로 가져와서 AI 기법을 동원해서 자동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재학습하도록 하여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니즈가 큰데, 전문기관 분석공간 내에서만 하라는 것은 제한이 너무 큼. 반출 절차를 충분히 열어두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모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음”

- 둘째, 시행령 간의 정합성 문제로 신용정보법 시행령에서는 개인신용정보의 임시 대체기를 결합의뢰기관(개인정보처리자)에서 생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는 한국 인터넷진흥원에서 생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규제 수준이 서로 다름

- 이에 시행령 최종안 제29조의3<sup>3)</sup>(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서는 산업계에서 지적해온 결합 및 반출절차에 관한 문제점들을 상당수 해소하였음

-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가 된 공간에서(즉, 분석공간) 결합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3항과 “분석공간에서는 결합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분석공간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결합된 정보의 반출을 신청하도록 한 제4항 전반부를 하나의 항(제3항)으로 묶어 문언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반출 제한 조건을 삭제하였음
- 제4항에서는 반출심사 기준들을 제시하여 신청자들의 사전 예측 가능성을 개선하였고 각호의 기준들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반출을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의무화하였음
- 이외에도 행안부는 6월 16일 설명회에서 공공기관 이외에 민간도 요건만 갖추면

3) 시행령 초안에서는 제29조의2



결합전문기관 지정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음(전자신문, 2020.06.16.)

- 다만, 시행령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대하여만 규정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는 불분명하므로 가이드라인에서 보충함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서는 위험도 측정(처리(제공)환경검토+ 항목별 위험도 분석) 결과에 따라 가명처리 수준을 달리하도록 하였음. 즉, 처리(제공)환경검토는 처리 목적에 따라 처리(제공)환경(내부활용/내부제공/제3자제공)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및 다른 정보 보유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항목별 위험도 분석은 개인식별 가능성이 높은 항목(식별정보+ 식별가능정보)을 분류하여 처리(제공)환경과 정보의 규모, 구체성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함
  - 또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외부 결합전문기관을 거치지 않고 내부에서 가명처리하여 결합을 하는 경우(내부활용/내부제공)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데, 안전한 결합을 위하여 결합전문기관의 결합 절차와 유사하게 처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음. 즉,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자와 결합을 하는 자를 서로 구분하여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결합과정에서 가명정보가 재식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

## Ⅲ

## 해외 주요국의 법제도 분석

## 1 European Union

## 가. GDPR 개요

- GDPR의 구성 체계 및 적용 범위
  - GDPR은 173개의 전문(recital)과 본문 99개 조문(article)으로 구성된 광범위한 법률임. 본문 99개 조문은 다음과 같이 11개의 장(chapter)으로 구분됨
    - \* 제1장 일반 규정
    - \* 제2장 원칙
    - \* 제3장 정보주체의 권리
    - \* 제4장 컨트롤러와 프로세서<sup>4)</sup>
    - \* 제5장 제3국 또는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
    - \* 제6장 독립적인 감독기관
    - \* 제7장 협력과 일관성
    - \* 제8장 구제, 책임, 벌칙
    - \* 제9장 특정 처리 상황에 대한 규정
    - \* 제10장 위임법률과 시행법률
    - \* 제11장 최종 규정
  - GDPR은 ‘Directive 95/46/EC’와는 달리 Regulation이라는 형식으로 제정되어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모든 EU 회원국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됨(2018.05.25. 발효)
  - 디지털 싱글마켓에 적합한 통일되고 조화된 규제체계이지만, 일부 조항들에 대하여는 회원국들이 자국 입법을 통해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하거나 추가적인 처리 조건을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
- GDPR 제정의 주요 의의
  - 첫째, 개인정보에 관한 새로운 권리를 추가하거나 기존 권리를 명확화하여 정보주

4) 컨트롤러 :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주체를 의미하며 자연인을 비롯하여 법인,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 기타 단체 등이 컨트롤러가 될 수 있음. 프로세서 :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연인, 법인,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 기타 단체 등을 의미함. 컨트롤러는 반드시 구속력있는 서면계약에 의해 프로세서를 지정하여야 함(한국인터넷진흥원, 2020.05)



체의 권리를 강화함

- \* 기존에도 존재하던 일반적 권리 :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Right to be informed), 정보주체의 접근권(Right of access by the data subject), 정정권(Right of rectification), 반대권(Right to object)
  - \* 새로 도입된 권리 : 처리 제한권(Right to restrict processing), 정보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
  - \* 기존보다 강화된 권리 : 삭제권(‘잊힐권리’)[Right of erasure(Right to be forgotten)], 프로파일링<sup>5)</sup>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Automated individual decision-making including profiling) 반대권
- 둘째, 개인정보 처리 활동의 기록, DPO(Data Protection Officer)의 지정, 개인정보 영향평가,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정보보호 등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
- \* 2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기업이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특수 기업은 개인정보 처리 활동에 대한 기록 의무가 있음
  - \* 개인정보 책임자(DPO)는 임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법규 준수 의무를 알리고 필요한 조언을 하며 기업 내부의 개인정보보호 이행 상황을 감독함
  - \*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컨트롤러의 책임성 이행을 위한 도구로서 개인정보 처리 이전에 시행되며 평가 내용에는 개인정보처리 작업의 필요성과 비례성에 대한 평가,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위험의 평가 등이 포함됨(한국인터넷진흥원, 2020.05)
  - \* Data protection by design and by default : 컨트롤러는 개인정보 처리 설계시부터 처리가 개인정보에 미칠 다양한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본설정을 통해 특정 처리 목적에 필요한 개인정보만 처리되도록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
- 셋째, 과징금 등 제재를 강화하여 GDPR 법규 준수의 실행력을 높임. 과징금은 전 세계 매출액(4% 또는 2%) 기준이며 모든 회원국이 통일된 기준으로 적용

**표 2** GDPR의 행정적 과징금

과징금 부과 금액	해당되는 위반사항들
전 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 유로 중에서 높은 금액(제83조 5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의 조건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처리 원칙 위반</li> <li>•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의무 위반</li> <li>• 제3국이나 국제기구 수신인에게 개인정보 이전시 준수 의무 위반</li> <li>• 제4장에 따라 채택된 회원국 법률의무 위반</li> <li>• 감독기관이 내린 명령 불복</li> <li>• 개인정보 이동 중지 미준수 및 열람 기회 제공의무 위반</li> </ul>
전 세계 매출액의 2% 또는 1천만 유로 중에서 높은 금액 (제83조 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 의무 위반</li> <li>• 인증기관 의무 위반</li> <li>• 모니터링 기관 의무 위반</li> </ul>

5) 개인의 특징을 분석하거나 예측하는 등 해당 개인의 특징을 평가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형태의 ‘자동화’된 개인정보처리를 의미함

- 넷째, 지리적 관할범위가 확대되어 EU 내에 사업장을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GDPR이 적용됨

- \* EU 밖에 있는 기업이 EU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 EU 밖에 있는 기업이 EU 정보주체가 수행하는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경우

#### ● 감독기관 및 원스톱숍 메커니즘

- GDPR은 회원국마다 하나 이상의 독립적인 감독기관을 설립하여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의 개인정보 처리 활동에 대한 감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자가 EU 여러 국가에 사업장을 두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감독기관이 주도하는 원스톱숍 메커니즘이 작동

- \* 원스톱숍 메커니즘 :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감독기관이 주 감독기관(lead supervisory authority)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른 회원국 감독기관들과 수시로 협력함으로써 컨트롤러나 프로세서가 하나의 감독기관만을 대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체계를 의미(GDPR 본문 제56조 및 전문 제127항 참조)

#### ●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

- 역외 이전 방법 : ‘적정성 결정’에 따른 이전(제45조), ‘적절한 안전조치’에 의한 이전(제46조), 특정 상황에 대한 예외(제49조)

-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 : 유럽집행위원회가 제3국의 법제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개인정보 이전이 적절한 보호수준을 보장한다고 결정한 국가나 국제기구에 대하여는 이전에 대한 별도 승인이 요구되지 않음

- \* 유럽집행위원회가 적절한 보호수준을 제공하고 있다고 인정한 국가에는 안도라, 아르헨티나, 캐나다(상업적 조직), 파로에 아일랜드, 건지(Guernsey), 이스라엘, 맨 섬(Isle of Man), 일본, 저지(Gersey), 뉴질랜드, 스위스 및 우루과이가 해당하며 한국과는 논의 진행 중(<https://ec.europa.eu/>)

- \* 최근 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과 미국이 2016년도에 체결한 데이터 전송 협약인 EU-US Privacy Shield가 적절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무효라고 판정(2020.07.16.)

- 적절한 안전조치(Appropriate safeguard)에 의한 이전 : 컨트롤러나 프로세서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에 정보주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유효한 법적 구제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조건하에 역외 이전을 허용

- \* 감독기관의 특정한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안전조치 :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Binding corporate rules), 표준 개인정보보호 조항(Standard data protection clauses), 승인된 행동 수칙, 승인된 인증 메커니즘

- \* 감독기관의 특정한 승인이 필요한 안전조치 : ①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와 제3국이나 국제기구의



컨트롤러, 프로세서 또는 정보 수입자 사이의 계약 사항, ②정보주체의 권리를 포함하는 정부 부처 또는 관련기관 간 집행력 있고 유효한 행정협정 내의 규정

- 특정 상황에서는 이전이 예외적으로 허용됨 : 예를 들어 정보주체가 적정성 결정 및 적절한 보호조치가 부재하여 이전에 따른 위험을 고지받은 이후, 정보주체가 이전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등

## 나. 주요 주제별 세부 내용 분석

### ● 가명처리 정의 및 관련 규정

- 가명처리(pseudonymisation)의 정의 : 가명처리란 추가적인 정보의 사용 없이는 더 이상 특정 정보주체에게 귀속될 수 없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sup>6)</sup>을 말함. 이때 추가적인 정보는 별도로 보관되어야 하고 해당 개인정보가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에게 귀속될 수 없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함(제 4조 5항)

\* 원문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기 위하여 '자연인'으로 번역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으로 번역해도 무방하다고 보여짐

\* 가명처리는 데이터 세트의 전체나 일부를 가상의 이름이나 부호로 대체함으로써 개인 식별가능성을 낮추는 데이터 처리를 의미(한국인터넷진흥원, 2020.05). 가명처리는 익명화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며 다만 정보주체와 데이터 세트간의 연결가능성(linkability)을 낮춘다는 점에서 유용한 보안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음(채성희 발표, 2020.05.14.)

-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는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하여 자연인에게 귀속될 수 있으므로 식별 가능한 자연인에 대한 정보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전문 제26항), 개인정보와 동일한 것으로 봄

\* 자연인이 식별가능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선별(single out) 등 그 자연인을 직간접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컨트롤러 또는 제3자가 합리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수단이 고려되어야 함. 그 수단이 자연인을 식별하는데 합리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식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의 모든 객관적인 요인을 고려하여야 하고 처리 시점에서 가용한 기술 및 기술 발전사항을 고려하여야 함(전문 제26항)

- 익명정보(anonymous information), 즉 식별되었거나 식별 가능한 자연인과 관련되지 않은 정보 또는 정보주체가 식별가능하지 않거나 더 이상 식별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익명화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전문 제26항)을 명확히 함

6)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such a manner that the personal data can no longer be attributed to a specific data subject without the use of additional information

- 가명처리 관련 규정들을 정리하면 표 3과 같음

표 3 가명처리 관련 GDPR 규정들	
규정	관련 조항
정보주체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컨트롤러의 의무를 충족시키는 기술적 조치로서 가명처리를 장려함	전문 제28항 및 제29항
가명처리된 정보를 무단으로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로 뒤바꾸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 침해가 됨	전문 제75항 및 제85항
가명처리를 포함한 안전조치는 최초 수집 목적과 다른 목적의 양립가능성을 판단하는 고려사항이 됨	제6조 4항
컨트롤러는 Data protection by design and by default를 고려하여, 처리의 방법을 결정하는 시점과 처리 당시 시점에서 가명처리를 포함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제25조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가지는 바, 가명처리는 이러한 기술적 조치에 해당함	제32조
가명처리는 공익을 위한 기록 보존, 과학적 연구 또는 역사적 연구, 통계 목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안전조치의 예로서 명시적으로 언급되고 있음	제89조

\* 자료 출처: 고려대학교, EU 개인정보보호법제(GDPR) 분석 및 개인정보보호 개선 입법수요 연구, 2016.07.

● 양립가능성 규정

- GDPR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처리를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만 허용함 : (1) 목적 외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목적 외 처리가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에 근거하는 경우, (3) 목적 외 처리가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제시된 당초 목적과 양립하는(compatible) 경우

- 특히 GDPR 전문 제50항은 공익을 위한 기록 보존 목적,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 통계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추가 처리(further processing)는 당초 목적과 양립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전문 제159항에서는 과학적 연구 목적 범위에 기술개발과 시연,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투자 연구, 공중보건 분야에서 공익을 위해 시행된 연구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

-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목적 외 처리가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한 당초 목적과 양립가능한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함(제6조 4항) : (a) 수집 목적과 추가 처리 목적 간의 연관성, (b) 특히 정보주체와 컨트롤러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수집된 상황, (c) 민감정보 또는 범죄정보인지 여부 등 개인정보의 성격, (d) 추가 처리가 정보주체에게 초래할 수 있는 결과 (e) 암호처리나 가명처리 등 적절한 안전조치의 유무



- \* 제6조 4항에서 고려해야 할 사용에 있어서 inter alia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among other things의 의미로서 위에서 언급한 주요 고려사항 이외에 다른 사항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더 고려할 수 있음을 의미함(장준영 발표, 2020.05.14.)

● 동의의 개념

- 동의(consent)에 대한 정의 : 정보주체의 동의는 본인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합의한다는 정보주체의 희망사항을 진술 또는 명확한 긍정 행위를 통해 자유로이 주어지고(freely given), 구체적이며(specific), 정보가 제공되고(informed) 모호하지 않은(unambiguous) 의사표시를 가리킴(제4조 (11))

- \* 동의의 의의 : 계약의 이행, 법적 의무 준수 등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6가지 기준 중의 첫 번째

- 동의는 다음의 4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유효함. 처리가 동의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컨트롤러는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 freely given : 정보주체에게 실질적인 선택권과 통제권이 부여되어야 함⇒ 정보주체는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권한을 가짐. 동의의 철회는 동의를 주는 것만큼 용이해야 함(제7조 3항)

- \* specific : 동의 내용은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함. 복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각 목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전문 제32항)

- \* informed : 정보주체에게 동의에 대한 (컨트롤러의 신원, 처리목적, 동의 철회 권리 등) 사전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 unambiguous : 침묵, 사전에 자동 체크된 개인정보처리 동의나 부작위는 동의에 해당되지 않음(전문 제32항)

- 명시적 동의(explicit consent)가 필요한 경우 : 민감정보 처리 금지의 예외 적용(제9조 1항 (a)),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 반대권의 예외 적용(제22조 2항 (c)), 적정성 결정 및 적절한 보호조치 부재 시 제3국으로의 이전(제49조 1항 (a))

- \* 명시적 동의 방법 : ex. 서면 진술에서 동의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서명을 받음(signed statement), 동의에 대한 2단계 검증(two stage verification of consent) 등(WP29, 2018.04)

● 개인정보 이동권과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 반대권

- 개인정보 이동권 : 정보주체는 컨트롤러에게 제공한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체계적이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며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식(machine-readable format)으로 수령할 권리가 있으며,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컨트롤러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다른 컨트롤러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이전할 권리를 가짐(제20조 1항 및 2항)

- \* 단, 개인정보 이동권은 (1)처리가 동의나 계약에 근거하고 (2)처리가 자동화된 수단으로 수행될 때 적용됨 : 두 조건이 and 관계임
  - \* 동의 또는 계약 이외에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이동권이 적용되지 않음. 개인정보 이동권의 행사는 다른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정보주체 본인의 개인정보 삭제권을 침해해서도 안됨(전문 제68항)
  - \* 이동권 대상은 정보주체와 관련한 개인정보여야 하고 (and)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여야 함. 이때 '정보주체가 제공한'이라는 용어는 광범위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창출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추론된 개인정보(inferred data)'와 '파생된 개인정보(derived data)'만 배제해야 함(WP29, 2017.04)
-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의의 : 정보주체에게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권한을 부여하고(=empowering) 서비스 프로바이더 간의 전환을 촉진하여(=Lock-in 약화) 경쟁을 강화하기 위함
- \* 경쟁적 측면에서 개인정보 이동권은 특히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고 있는 산업군에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경험상 확인했거나 현재 경험하고 있음. 이동통신산업은 2002년도에 번호이동제도를 도입하여 그 효과가 증명되었으며 금융산업은 PSD2(Payment System Directive)를 도입하여 경쟁촉진 효과를 증명하려 하고 있음(이진규, 2020.09)
- GDPR은 다음의 3가지 경우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반대권을 보장 : (1)직접마케팅(프로파일링 포함)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언제든지 반대할 수 있음(제21조 2항), (2)정보주체 자신의 특별한 상황에 따라 컨트롤러의 적법한 이익 또는 공적 업무수행에 근거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반대할 수 있음(제21조 1항), (3)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또는 통계 목적의 처리에 대해 정보주체 자신의 특별한 상황에 따라 반대할 수 있음(제21조 6항)
-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 반대권 : 정보주체는 프로파일링 등, 본인에 관한 법적 효력을 초래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본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처리에만 의존하는 의사결정(a decision based solely on automated processing, including profiling)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를 가짐(제22조 1항)<sup>7)</sup>. 정보주체는 온라인 신용 신청의 자동 거절이나 인적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전자 채용 관행 등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를 가짐(전문 제71항)
- \* 단, (1)정보주체의 명백한 동의 또는 계약 이행을 위한 경우와 (2)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 및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EU 또는 회원국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 권리가 보장되지 않음. (1)에 근거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컨트롤러가 정보주체에게 적절한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
  - \* 프로파일링을 포함하여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경우 컨트롤러는 책임성 보장을 위해 개

7) 프로파일링은 3가지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음 : 일반적인 프로파일링, 프로파일링에 기반한 의사결정, 프로파일링을 포함하여 완전 자동화된 의사결정(제22조 적용 대상)



인정보 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함(제35조 3항 (a))

● 회원국 입법재량 사항들

- GDPR이 회원국들에게 선택적 또는 추가적 입법을 허용한 재량 사항들은 아래의 표 4를 참조

**표 4** GDPR이 회원국에게 허용한 입법재량 사항들

제목	범위	관련 조항
법적 의무 및 공공과업에 대한 사양	IX장에 따른 특정 처리 상황을 포함한 법적 의무 또는 공공과업 준수를 위한 처리와 관련된 규정의 적용을 적응시킴(adaption)	제6조 2항 및 3항
정보사회서비스에 관한 동의 연령 제한	최소 연령을 13~16세 사이에서 결정	제8조 1항
특수 범주 데이터 (민감정보) 처리	유전자 정보, 생체정보 또는 건강 관련 정보의 처리를 위한 (한계를 포함한) 추가조건의 유지 또는 도입	제9조 4항
정보 제공 요건의 예외	법률에 의해 명백히 규정된 취득 또는 공개자료이거나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직무상 비밀	제14조 5항 (c) 및 (d)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	일반적 금지로부터 제외되어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허용	제22조 2항 (b)
정보주체 권리의 제한	나열된 중요 목표들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비례적인 경우 제12조~22조, 제34조 및 제5조의 해당 조항 제한	제23조 1항
협의 및 승인 요구	컨트롤러가 공익을 위한 과업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기관으로에게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도록 요구	제36조 5항
추가 사례에 대한 DPO 지정	제37조 1항 이외의 사례에 대한 DPO 지정	제37조 4항
이전의 제한	특수 범주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제49조 5항
조직 자체 권리에 따른 민원 및 법원 조치 제기	정보주체의 위임과는 별도로 민원 및 법원조치를 제기할 수 있는 (비영리기구 등) 프라이버시 조직의 권한	제80조 2항
공식문서에 대한 접근	공식문서에 대한 공공 접근과 개인정보 보호 권리 간의 조화	제86조
국가별 식별번호 처리	국가별 식별번호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들	제87조
고용 상황에서의 처리	피고용인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보다 특수한 규칙들	제88조
공익적 기록보존, 연구 또는 통계적 목적 처리로부터의 제외	그러한 권리가 특정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중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용의 일부 제외	제89조 2항 및 3항
정보보호와 비밀 의무 간의 조화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기관의 조사 권한에 관한 특정한 규칙	제90조

\* 자료 출처: EC,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2020.06.24.

- 예를 들자면 정보사회서비스를 위한 아동의 동의 연령 제한(GDPR 제8조 1항)에 대하여 회원국들은 서로 다르게 입법 조치함. 즉, 9개 국가(독일, 네덜란드 포함)는 16세를<sup>8)</sup> 3개 국가(프랑스 포함)는 15세를 선택하였고 6개 국가(스페인, 이탈리아 포함)는 14세를 그리고 8개 국가(핀란드, 스웨덴 포함)는 13세를 선택함
- 건강 및 연구 목적을 포함하여 특수 범주 데이터의 처리를 위한 사양 및 보호 수준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서로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였음. 대다수 회원국들은 유전자 정보, 생체정보 또는 건강 관련 정보의 처리를 위한 추가조건을 유지하거나 도입하였음

#### 다. GDPR 시행 평가와 적정성 결정에 관한 최근 동향

##### ● GDPR 시행 2주년 평가<sup>9)</sup>의 주요 내용

- 전체적인 평가 의견 :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EU 내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려는 목표 달성에 전체적으로는 성공했음. 그러나, 미래에 개선해야 할 점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 확인됨

\* 다만, 시행을 시작한지 2년밖에 경과하지 않아서 분명한 결론 도달에는 아직 이른 시점임

- GDPR의 집행 및 협력 & 일관성 메커니즘 :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관들은 이전보다 강화된 권한을 균형 있게 사용해왔으며 국경을 초월한 사례들(cross-border cases)에 대하여는 원스톱숍 메커니즘과 상호 지원(mutual assistance)을 통해 기관 간의 협력을 발전시켜왔음. 그러나, 감독기관들은 공동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공동작업(joint operation) 등 GDPR이 제공하는 도구(tool)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함. 또한, 국경을 초월한 사례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되도록 절차를 개선시킬 필요도 있음

\* 감독기관들의 시정 권한(corrective powers) 활용 현황 : 행정적 과징금은 22개 기관이<sup>10)</sup>, 경고 및 견책은 23개 기관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한 준수 명령은 26개 기관이, 처리 작업이 GDPR을 준수되도록 하라는 명령은 27개 기관이, 처리의 교정·삭제 또는 제한 명령은 17개 기관이 활용

8) 정보사회서비스 직접 제공과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는 최소 16세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만 적법.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

9) GDPR 제97조에 의거 유럽집행위원회는 GDPR 시행 2년에 대하여 평가하고 리뷰하여 보고서를 발간(2020.06.24.). 향후에는 매 4년마다 평가하게 됨. 이번 평가는 첫 평가였기 때문에 제97조에서 규정한 역의 이전, 협력 및 일관성 메커니즘 이외에도 여러 이슈들을 폭넓게 포함시킴

10) GDPR 적용 이후 2019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22개 감독기관은 총 785건의 행정적 과징금을 부과함.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 독일 부동산 회사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 침해에 대하여 14.5백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 오스트리아 우편 서비스사에 의한 대규모의 민감정보 불법 처리에 대하여 18백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 이용자 동의 획득 조건 위배를 이유로 프랑스 감독기관(CNIL)이 구글에게 50백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



- \* GDPR 발효 이후 2019년 말까지 총 141건의 잠재적 결정이 원스톱숍 절차를 통해 제출되었으며 그 중에서 79건이 최종 결정에 도달한 상태임. 아직까지 미결 상태인 사례들 중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포함된 사례들이 상당수 있음
- \* 2019년말까지 115건의 상호 지원이 있었으나 공동작업은 아직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음
- \* 협력 및 일관성 메커니즘의 작동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은 EDPB(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임. 모든 감독기관들이 참여하여 운영되는 EDPB는 GDPR의 일치된 해석과 집행을 지향하며 2019년말까지 67개의 문서(10개 가이드라인 포함)를 채택함
- GDPR 실행 현황 : 회원국을 모니터링한 결과 슬로베니아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 개인정보 보호 법률을 개정하는 등 GDPR을 실행하고 있음. GDPR은 조화되고 통일된 접근법을 제공하지만 회원국들이 별도 입법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재량사항들(앞서 표 3 참조)로 인해 부분적인 파편화가 발생
- 개인들의 자기 정보 통제 강화 : 개인들은 정보주체로서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감독기관에 대한 이의제기 등 절차적 권리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더 많이 실행되도록 촉진이 필요. 개인정보 이동권은 온전히 활용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개인들의 선택권을 강화하여 경쟁과 혁신을 조장할 개연성이 있음
  - \* Fundamental Rights Survey에 의하면 16세 이상 EU 인구의 69%가 GDPR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며 71%는 자국의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관을 알고 있다고 응답
  - \* 유럽 데이터 전략(2020년 2월)은 기술적 인터페이스 및 기계판독이 가능한 포맷을 의무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이동권의 모든 가능한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음. 현재는 금융, 통신, 수자원 및 난방 계량기와 같은 특정 분야에서만 기업들이 필요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였음
- 중소기업의 기회와 과제 :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관들은 중소기업들의 GDPR 준수를 돕기 위하여 교육 컨설팅 제공, 여러 가지 툴 및 가이드언스를 개발·제공.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들은 책임성 원칙 이행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면서 자신들의 상황에 부합되고 비용부담이 적은 행동 수칙(code of conduct) 마련을 강조
- 신기술에 대한 적용 : GDPR은 기술중립적인 방식으로 구상되어 신기술을 커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중에 추적 앱 개발 및 기타 기술 솔루션 설계와 관련하여 GDPR의 유연성이 입증됨. 특히 GDPR의 Future-proof 및 위험기반 접근법은 인공지능을 위한 미래 프레임워크와 데이터 전략 구현시에도 적용될 예정임. 다만, 입증된 원칙들을 신기술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명료화시키는 것이 과제임
  - \* 이해관계자들은 (규칙의 적용에 대한 가이드언스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규제 샌드박스 같은 접근 방식이 신기술을 테스트하고 업계가 data protection by design and by default 원칙을 신기술에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 : 유럽집행위원회는 핵심 파트너 국가들과 적정성 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관여해왔으며 표준계약조항의 포괄적인 현대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 적정성 결정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 측면에서 싱글마켓의 편익을 제3국으로 확대하는 효과가 있음. 적정성 결정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주기적으로 리뷰되어야 함<sup>11)</sup>. 2019년 1월에는 일본과의 적정성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한국과는 논의 과정을 밟고 있음.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관계설정에 있어서도 적정성은 중요한 요소임.

- \* 표준계약조항 : 적정성 결정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활용되는 데이터 이전 방법이며 유럽집행위원회는 기존 조항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작업 중

- \*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 : 40개 이상의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이 승인을 받기 위해 준비·대기 중

- \* 개인정보 국제 이전을 위한 도구로서의 인증 메커니즘(EU 내에서 사용 촉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이미 채택함)과 행동 수칙을 활용하기 위한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작업이 진행 중

- 개인정보 분야의 국제협력 : GDPR은 글로벌 레퍼런스로 활용되고 있으며 많은 전 세계 국가들이 자국 법률을 현대화하는데 있어 촉매제 역할을 수행. 유럽집행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글로벌 확산과 수렴을 조장하기 위하여 많은 다른 글로벌 포럼들과 대화를 강화하고 있음

- \* 집행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글로벌 수렴을 촉진하면서도 디지털 보호주의에는 맞서겠다는 입장임. 이를 위하여 데이터 플로우 및 데이터 보호에 대한 특정 조항들을 개발하여 호주, 뉴질랜드 및 영국과의 양자 협상과 WTO 전자상거래 회담 같은 다자 무역협상 테이블에 체계적으로 올려놓음

- \* 집행위원회는 OECD가 최근에 설립한 '데이터 거버넌스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작업반에 참가하고 있으며 이미 작성 완료된 '인공지능에 관한 OECD 권고안' 마련에도 능동적으로 기여함. 또한, 유럽과 유사한 법제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과는 여러모로 대화하고 있으며 해외 개인정보 보호 기관과의 지식, 경험 공유 및 협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 보호 아카데미' 설립을 추진 중

- 최근 유럽사법재판소는 EU-US Privacy Shield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보호의 적정성에 관한 Decision 2016/1250이 무효라고 판결<sup>12)</sup>(2020.07.16.)

- 배경 : 페이스북 이용자인 오스트리아 국적의 Maximillian Shrems는 페이스북 아일랜드사가 미국으로 이전시킨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미국의 법과 관행이 국가안보국(NSA : National Security Agency) 등의 감시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11) 예를들어 2016 EU-US Privacy Shield 적정성 채택 이후 그 프레임워크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매년 EDPB 대표들과 함께 리뷰해왔음. GDPR 첫 평가 작업의 일환으로서 집행위원회는 1995년도 지침하에서 채택된 11개 국가의 적정성 결정에 대하여도 리뷰해야 하는 상황임. 다만, 7월 16일로 예정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 별도로 리뷰 결과를 보고할 예정임

12) 반면, 데이터 이전을 위한 표준계약조항에 대한 Decision 2010/87은 유효하다고 판정



제공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개인정보가 미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금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아일랜드 감독기관에게 제기함(2013.06). 그러나, 그 청원은 미국을 적정한 수준의 데이터 보호가 보장되는 국가라고 결정한 Decision 2000/520 (즉, 세이프 하버 협정 최종 승인)에 의거하여 거부됨

\* 세이프 하버(Safe Harbor) 협정 : 미국 기업들이 고지, 선택, 제공, 접근, 안전성, 데이터 무결성, 집행의 7가지 세이프 하버 원칙을 충족하면 EU 주권 지역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자유로이 미국으로 이전 가능

- Schrems I 판결 : 이에 Shremes는 아일랜드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10) 아일랜드 고등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preliminary ruling)을 요청하는 중간 판결을 내림(2014.06). 2015년 10월 6일 유럽사법재판소는 집행위원회 결정(세이프 하버 협정 최종 승인)의 존재가 회원국 개인정보 감독기관의 권한을 제거하거나 축소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또한, 집행위원회의 결정이 유효한지를 결정할 최종 권한은 유럽사법재판소가 가진다고 하면서 세이프 하버는 무효라고 판결. 무효 판결의 핵심은 세이프 하버가 EU 지침하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임

- 경과 : 이후 유럽집행위원회는 세이프 하버보다 엄격한 정보보호 의무를 미국 기업들에게 부과하기로 한 EU-US Privacy Shield 협정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보호가 적절하다는 Decision 2016/1250을 채택함(2016.07)

\* 프라이버시 실드 협정 : 세이프 하버 협정과 비교하여 EU 시민의 데이터를 수령한 미국 기업에 대하여 엄격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며 개인정보 침해 구제를 위하여 독립적인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 Schrems II 판결 : 그러나, 아일랜드 고등법원은 Privacy Shield 결정 및 표준계약조항 결정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선결 판결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요청하였고 그 결과 EU-US Privacy Shield는 무효로 표준계약조항은 유효로 판결됨(2020.07). 특히 Privacy Shield는 EU에서 미국으로 이전된 데이터에 대한 미 당국의 접근 제한이 비례성 원칙에 따라 EU법이 요구하는 만큼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지 않고 옴부즈만의 독립성 보장 및 권한이 불충분하다고 보아 무효로 판결됨

- Schrems II 판결의 의의와 전망 : Privacy Shield의 폐지로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IT 기업들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더욱 까다로워져 기업활동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EU-US 간에는 새로운 데이터 이전 협정 체결이 시도될 것으로 전망됨

## 2 미국

### 가. 패치워크 된 법제 현황 및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 제안 동향

- 섹터별로 패치워크 된 법제
  - 미국은 유럽과는 달리 연방차원에서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금융, 통신, 의료 등과 같이 섹터별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화가 추진되어 왔음. 더구나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에 비해 섹터별로 몇 가지 예외적인 법제를 제외하고는 자율규제가 일반적인 형태임
  - ‘1974년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of 1974)’이 제정된 이래 ‘1978년 금융 프라이버시법(Financial Privacy Act of 1978)’, ‘1986년 전자통신 프라이버시법(ECPA :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of 1986)’, ‘1996년 의료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HIPPA :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1998년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 :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1998)’ 등이 제정되어 왔음
  -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기존의 자율규제와 옵트아웃 방식에 의한 정보처리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과거보다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 발표가 대표적임. 반면 트럼프 정부는 FCC 프라이버시 규칙을 폐기하는 등 반대 방향의 노선을 견지
-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 제안 동향
  -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 :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이 시행되고 연방 차원에서의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 법제화 요구가 높아지면서 민주당, 공화 양당 의원들에 의해 제안된 법률안들이 상원에서 논의 중
    - \* 제안된 입법안 : ‘소비자 온라인 프라이버시권 법’(2019.12), ‘2019년 온라인 프라이버시권 법’(2019.11), ‘프라이버시 권리장전 법’(2019.04),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2019.02)(이규업 외, 2020.02)

### 나.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

- CCPA의 주요 특징(이창범, 2020.03.26. & 네이버 블로그, 2018.08.22.)
  - CCPA는 캘리포니아 민법전(California Civil Code) 제1.81.5편(Title 1.81.5)에 추가된 19개 조문으로 되어 있음. 공공부문과 연방데이터보호법에 따라 별도로



보호받고 있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일반법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개별법주의와 차이가 있음

- 캘리포니아에 주소나 실체를 두고 있지 않은 기업들도 캘리포니아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면 CCPA의 적용을 받게 됨(즉, 역외기업에게도 적용). CCPA는 스타트업 등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1) 연간 순매출액이 25백만달러 이상 이거나 (2) 사업목적으로 5만명 이상의 소비자, 가정 또는 기기의 개인정보를 단독 또는 연합하여 구매, 판매, 공유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됨
- 소비자의 권리로는 정보공개 요구권, 삭제 요구권, 판매중단 지시권(옵트아웃권리), 접근권, 권리행사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
- 개인정보 범위가 미국 법령들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정의보다 훨씬 넓게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 사항들이 개인정보에 포함됨(더 상세한 내용은 CCPA의 1798.140(o)(1) 참조)
  - \* 실제 이름, 별명, 우편주소, 고유 개인 식별자, 온라인 식별자, IP 주소, 이메일 주소, 계정이름, 사회보장숫자, 자동차운전번호, 여권번호나 기타 유사한 식별자
  - \* 상업정보로 개인 자산의 기록, 구매·취득·고려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기타 구매하거나 소비한 내역이나 성향 등을 포함
  - \* 생체 정보
  - \* 인터넷 또는 기타 전자네트워크 활동 정보로 브라우징 내역, 검색 내역, 인터넷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광고와 소비자의 상호작용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
  - \* 지리 위치 정보
- 사업자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사전 동의를 요구하지 않으며 소비자는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판매 중단을 지시할 권리(옵트 아웃 권리)를 가짐. 사업자는 소비자가 CCPA에 따른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해상 소비자에 대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거부, 품질·가격 차등화 등 어떤 차별도 해서는 안됨(다만, 합리적 차별은 가능)
- 사업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보안조치 의무가 있음.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형사벌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소비자 집단소송, 법정손해배상, 실제손해배상 등 민사적 제재수단과 함께 민사벌금(최대 \$7,500)제도를 도입함. GDPR과 같이 글로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천문학적인 과징금 제도는 없음
- 소비자의 권리
  - 정보공개 요구권 : 소비자는 사업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범주 및 특정 항목을 자신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권리를 가짐(1798.100(a))

- \*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업자는 수집 당시 또는 이전에 수집한 개인정보의 범주와 개인정보 범주가 사용될 목적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본 섹션에 부합하는 고지를 하지 않고서는 추가적인 목적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추가적인 범주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됨(1798.100(b)). 사업자는 (a)항에서 규정된 정보를, 증명 가능한 소비자의 요청을 접수 받은 후에만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 사업자는 증명 가능한 소비자의 요청을 접수 받은 후 45일 이내에, 요구받은 정보를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 및 전달하여야 함(1798.130(a)(2))
- 삭제 요구권 : 소비자는 자신에 대해 수집한 개인정보(any personal information about the consumer)를 사업자에게 삭제 요청할 권리를 가짐(1798.105(a))
  - \* 본 섹션의 (a)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삭제하라는 소비자의 증명가능한 요청을 접수받은 사업자는 당사의 기록에서 해당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관련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게 해당 업체의 기록에서 관련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하여야 함(1798.105(c))
- 판매중단 지시권 : 소비자는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한 사업자에게 언제든지 개인정보를 팔지 말 것을 지시할 권리를 가짐. 이 권리는 옵트아웃 권리로도 지칭될 수 있음(1798.120(a))
  - \* 소비자로부터 개인정보 판매 금지의 지시를 받았거나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판매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해서는 안됨(1798.120(d))
  - \* 섹션 1798.120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내 개인정보를 팔지 마세요(Do Not Sell My Personal Information)”라는 제목의 눈에 띄고 확실한 링크를 사업자의 인터넷 웹페이지에 제공하여, 소비자 또는 소비자가 승인한 개인이 소비자의 개인정보 판매에 옵트아웃할 수 있도록 해야 함(1798.135(a)(1))
- 접근권 : 소비자로부터 개인정보 접근에 대한, 증명 가능한 요청을 수령 받은 사업자는 본 섹션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를 무료로 제공 및 전달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해당 정보는 우편이나 전자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음. 전자방식으로 제공되는 경우 해당 정보는 이동가능한(portable) 형태여야 하며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비자가 방해받지 않고 이 정보를 다른 독립체에게 전송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도록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형식(readily usable format)으로 제공되어야 함(1798.100(d))
  - \* 참고로 고수윤(2020)은 접근권의 일부로서 개인정보 이동권이 부분적으로 보장된다고 평가하였음. 즉, GDPR의 개인정보 이동권은 (1)컨트롤러에게 제공한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체계적이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식(machine-readable format)으로 수령할 권리와 (2) 이를 다른 컨트롤러에게 이전할 수 있는 권리가 둘다 보장되지만, CCPA는 수령할 권리만 보장된다고 보았음
- 권리행사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사업자는 소비자가 본 타이틀에 따라 어떠한 권리든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소비자를 차별하는 다음 행위



및 기타 등등의 차별 행위를 해서는 안됨(1798.125(a)(1)). 만약 차별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가치와 합리적인 관련이 있다면 금지되지 않음(1798.125(a)(2))

- \*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
- \* 할인정책이나 다른 편의 또는 별칙을 부과하는 등, 재화 또는 서비스에 차별된 가격을 부과
- \* 소비자에게 다른 품질의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
- \* 소비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 다른 가격으로 제공 받을 수 있거나 다른 품질의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암시

●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주요 벌칙 조항

- 사업자가 개인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보안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암호화 또는 미편집된 개인정보가 무단 접근, 침입, 도난 또는 공개된 모든 소비자는 다음 중에서 어느 하나, 즉 (A) 1인당 \$100~75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실제 손실금액 중 더 큰 손해 복구, (B) 명령적 또는 선언적 구제 및 (C) 법원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기타 다른 구제를 위해 민사소송(civil action)을 제기할 수 있음(1798.150 (a)(1))
- 소비자가 개별소송이나 집단소송을 제기하려면 30일 이전에 사업자에게 위반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함(1798.150 (b)(1))
- 주 법무장관은 사업자에게 CCPA 미준수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각 위반에 대하여 \$2,500의 민사벌(civil penalty)을 처분받게 됨. 특히 의도적으로 이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게는 위반 건당 최대 \$7,500까지의 민사벌이 부과될 수 있음(1798.155 (b))

### 3 일본

#### 가. 2015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 2015년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 개정 추진 배경 :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재적 문제점 해결 및 빅데이터 시대 도래에 대한 대응,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 EU GDPR 추진 등 대외적 환경 변화 추세를 고려
  - 개정법 목적(제1조)의 변화 : 개인의 권리의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규정에 더하여 “개인정보의 적정하고 효과적인 활용이 새로운 산업의 창출 및 활력있는 경제사회와 풍요로운 국민 생활의 실현에 이바지”가 새로이 추가됨
  - 개정법의 주요 내용 : ① 개인정보 정의를 명확화, ② 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 구축, ③ 목적제한의 예외 사유(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4호), ④ 개인정보취급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동의 및 고지제도, ⑤ 명부업자(데이터 브로커)의 법적 지위 명확화, 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⑦ 변호이용법, ⑧ 기타 주요 개정사항, ⑨ 데이터베이스 제공죄(제83조), ⑩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대응(개인정보 취급의 글로벌화)(경성대학교, 2017.12). 본 고에서는 국내 데이터 법제도와와의 비교 및 향후 개선 방향 마련에 있어 시사성이 높은 항목인 ②, ④, ⑩에 대하여만 서술하기로 함
- 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 구축
  - ‘익명가공정보’의 개념 도입(제2조(정의) 제9항) : ‘익명가공정보’란 각호에 열거된 개인정보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얻어지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말함
    - \* 일본의 익명가공정보는 우리나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가명정보와 유사한 개념이나 복원 불가능(불가역성)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게다가, 우리나라 법에서는 가명정보를 EU GDPR과 유사하게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분류하지만, 일본에서는 익명가공정보를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익명가공정보취급사업자 등의 의무 신설(제4장 제2절) : 제4장 제2절은 제36조(익명가공정보의 작성 등), 제37조(익명가공정보의 제공), 제38조(식별행위의 금지), 제39조(안전관리 조치 등)로 구성
    - \* 익명가공정보제도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정보에 대해, 일정 규율하에 자유로



운 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도록 함. 즉,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해 정해진 가공 기준에 근거하여 작성된 익명가공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제2항 이후에 열거된 안전관리조치 및 식별행위의 금지, 공표 의무 등의 일정 규칙하에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특정된 이용목적 이외에서의 이용 및 제3자에의 제공이 가능(경성대학교, 2017.12)

● 개인정보 취급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동의 및 고지제도

-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의무중에서 정보주체의 권리와 관련된 조항들 : 제27조(보유개인데이터에 관한 사항의 공표 등), 제28조(開始), 제29조(정정 등), 제30조(이용정지 등), 제31조(이유 설명)

\* 보유개인데이터<sup>13)</sup>라 함은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개시, 내용의 정정·추가 또는 삭제, 이용의 정지, 소거 및 제3자 제공의 정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개인데이터로, 그 존부가 밝혀짐에 따라 공익 기타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것(제2조(정의) 제7항)

\* 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주체의 권리 : 개시 청구권<sup>14)</sup>(제28조 제1항), 정정·추가 또는 삭제 청구권(제29조 제1항), 이용정지 또는 소거 청구권(제30조 제1항), 제3자제공 정지 청구권(제30조 제3항)

- 동의 제도(예외사항 제외) : 원칙적으로 동의받지 않으면 특정된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sup>15)</sup> 외의 개인정보 취급은 불가(제16조(이용목적에 의한 제한))하고, 동의받지 않으면 제3자 제공이 불가(제23조(제3자 제공의 제한))하며, 동의를 얻어야 외국에 있는 제3자에 제공이 가능(제24조(외국에 있는 제3자에의 제공 제한))

\* 개정법은 제3자제공의 제한에 대한 예외사항(제23조 제2항 이하)을 부분적으로 개정하였으며 제24조는 신설하였음

- 고지제도 : 제18조(취득시 이용 목적의 통지 등), 제23조 제2항 통지에 의한 제3자 제공, 제29조 제3항 정정 등의 통지, 제30조 제5항 이용정지 등 통지

●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대응

- 구법에는 존재하지 않던 제24조(외국에 있는 제3자에의 제공 제한)를 신설하여 개인정보의 외국에 있는 제3자에의 제공은 일차적으로는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고 제한함. 다만, 조문의 괄호에서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에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외국으로서 개인정보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국을

13)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 '개인데이터', '보유개인데이터'의 3가지로 분류하고 있음. '개인정보'보다 '개인데이터'가 지켜야 할 의무가 많고 또 '개인데이터'보다 '보유개인데이터'가 지켜야 할 의무가 많아짐

([https://www.newton-consulting.co.jp/itilnavi/column/personalinfo\\_protection\\_law2020.html](https://www.newton-consulting.co.jp/itilnavi/column/personalinfo_protection_law2020.html))

14) 접근권 또는 열람권에 해당

15) 제15조(이용목적의 특정) ①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그 이용목적에 가능한 한 특정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이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의 이용목적과 연관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해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양립가능성 규정에 해당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한다고 충분히 인정되는 국가에게는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인정함

제24조(외국에 있는 제3자에의 제공의 제한)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외국(일본의 역외에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개인의 권리의익을 보호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에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외국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일하다)에 있는 제3자(개인데이터의 취급에 대하여 이 조의 규정에 의해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에 상당하는 조치를 계속적으로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체제를 정비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일하다)에게 개인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前條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외국에 있는 제3자에의 제공을 인정하는 취지의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이 경우에는 同條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EU 적정성 평가의 인정 : 2019년 1월 유럽집행위원회는 일본이 EU GDPR에 부합하는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적정성 평가를 최종적으로 승인함.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5.09.)과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일본 정부의 협상 추진 결과물임

\* 양국 간의 개인정보보호체제 간극을 좁히기 위해 도입한 보조 규정(Supplementary Rules) : 요약  
 - 개인정보(민감정보), 보유개인데이터, 이용목적 특정, 역외 제3자에게 정보 제공 제한, 익명가  
 - 공정보. 보조 규정은 적정성 인정에 의해 EU에서 이전되는 개인데이터에 대하여만 적용됨(이정  
 - 은, 2019.04)

## 나. 2020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 ●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 배경 :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한 2015년도 개정법의 부칙 제1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 고조,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보호와 이용·활용의 균형 및 국경을 넘는(越境) 데이터 유통 증대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게 되었음(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06.12.)
- 주요 개정 내용(이창범, 2020.11) : ① 개인데이터 취급에 대한 본인의 권리 강화, ② 개인데이터 제3자제공에 대한 통제권 및 투명성 강화, ③ 개인데이터 유출 등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책무 강화, ④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 촉진, ⑤ 개인데이터의 안전한 이용·활용 확대 및 촉진, 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의 강화 및 ⑦ 개인정보보호법의 역외적용과 국외이전 규제 강화 등이 있으며, 아래에서는 ⑤ 및 ⑥에 대해서만 상술함

\* 기업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경 사항들<sup>16)</sup> : (1) 이용정지, 소거, 제3자 제공 정지의 청구에



관한 요건 완화, (2) 개시 등의 대상이 되는 보유 개인정보의 범위 확대, (3) 유출 등 보고 의무화, (4) 개인정보 제공처 기준 명확화, (5) 법인에 대한 벌금의 강화

\* 또한, 개인정보와 익명가공정보의 중간과 같은 ‘가명가공정보’가 도입되므로 기업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도 기대됨

●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활용 확대 및 촉진

- 혁신 촉진을 위한 관점에서 ‘가명가공정보’<sup>17)</sup> 도입 : ‘개인식별부호를 포함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식별정보의 전부를 삭제하거나 복원할 수 없는 다른 정보로 대체하는 것에 의해, 그 이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이름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복원할 수 없는 다른 정보로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대조하지 않고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해서 얻은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함(제2조 제9항 <신설>)(이창범, 2020.11)

\* 가명가공정보는 개인정보인 가명가공정보와 개인정보가 아닌 가명가공정보로 구분됨(즉, 일부만 개인정보에 포함). 반면, 익명가공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음. 익명가공정보는 개인과 연결되는 정보가 삭제되기 때문에 제3자제공이 허용되지만, 가명가공정보는 제3자제공이 제한되는 대신에 데이터 유용성이 개인정보와 동등하게 유지됨으로써 보다 상세한 분석이 가능<sup>18)</sup>

- 가명가공정보는 기업 내부 분석으로 한정하는 등을 조건으로 하여 개시·이용정지 청구에 대한 대응 등의 의무가 완화됨

- 가명가공정보의 도입 이유 : 기존의 익명가공정보에서는 사업자가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개인이 파악할 수 없는 수준까지 추상화해야 하며 제한 범위가 크기 때문에 데이터 활용시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가 어려움<sup>19)</sup>

- ‘개인관련정보’<sup>20)</sup>의 개념 도입 및 제3자 제공 동의 확인 의무화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가명가공정보, 익명가공정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개인관련정보로 정의하고 개인관련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도록 제공업체에게 의무화(제26조의2 <신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의 강화

- 주요 개정 내용 : 개인정보위원회(PPC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가 내린 명령 위반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으며 허위 보고 등에 대한 벌금은 50만엔 이하로 강화됨. 게다가 법인과 개인의 자력 격차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가 내린 명령 위반과 데이

16) [https://www.newton-consulting.co.jp/itilnavi/column/personalinfo\\_protection\\_law2020.html](https://www.newton-consulting.co.jp/itilnavi/column/personalinfo_protection_law2020.html)

17) 가명가공정보는 다른 정보와 대조하면 개인에 대한 식별이 가능

18) <https://acompany.tech/blog/comparison-anonymization-pseudonymisation/>

19) <https://acompany.tech/blog/comparison-anonymization-pseudonymisation/>

20) 인터넷 행태정보, 기기정보 등이 개인관련정보에 해당

터베이스 등 부정제공죄에 대한 법인의 벌금형 최고액을 1억엔 이하로 크게 인상함(제87조 제1항 개정 및 1호, 2호 신설)

**표 5**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법정형의 비교

구분		징역형		벌금형	
		개정전	개정후	개정전	개정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명령 위반	행위자	6월이하	1년이하	30만엔이하	100만엔이하
	법인	-	-	30만엔이하	1억엔이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등의 부정제공 등	행위자	1년이하	1년이하	50만엔이하	50만엔이하
	법인	-	-	50만엔이하	1억엔이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의 허위보고 등	행위자	-	-	30만엔이하	50만엔이하
	법인	-	-	30만엔이하	50만엔이하

※ 자료 출처: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https://www.ppc.go.jp/personalinfo/legal/kaiseihogohou/#houteikei>, 2020.12.

제87조 ①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혹은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서 열거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벌금형을, 그 개인에 대하여는 해당 본조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1. 제83조 및 제84조 1억엔 이하의 벌금형 <신설>
2. 제85조 동조의 벌금형 <신설>

- 개정 이유 :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특히 기업에 부과되는 벌칙이 경미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벌칙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므로 법인과 개인의 벌칙을 차등화하였음-기존에는 벌칙이 동일. 다만, 기존 법령하에서도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에 의하여 위반행위가 충분히 시정되고 있는 관계로 (개인의) 벌칙의 강화는 최소화하였음



**IV**

**국내 데이터 법제도 향후 과제와 개선 방향**

**1 데이터 3법 재개정의 필요성과 향후 추진과제**

- 국내 데이터 3법,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향후 재개정 추진이 필요
  -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가명정보·가명처리 개념 도입 및 결합근거 마련과 함께 EU와의 적정성 결정에 가장 시급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정보주체의 권리는 강화되지 못하였음
  - 개정 이전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가장 큰 특징이었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광범위한 형사벌 위주의 제재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어 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애로로 작용
  - 개정안 마련 기간이 짧았고 국회 논의 과정이 충분하지 않아 개정 데이터 3법이 적절한지, 보완이 필요한지 등이 심도 있게 토의되지 못하였음. 개정안이 시급히 준비되다 보니 세세한 검토 시간이 부족하여 6장 특례의 내용이 너무 많아짐
  -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간 정합성 문제가 일부 남아있어 개선이 필요함. 특별법인 신용정보법이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정의나 목적 등에서 볼 때 보다 넓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정부 소관부처도 개인정보보호법 재개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참작하여 향후 추진과제들에 대한 개선 방향 모색이 필요
  - 2020년 2월에 발간된 ‘제4차(2021~2023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에 포함된 추진과제들의 일정을 살펴보면 2021년 하반기까지 법률 재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됨(아래의 표 6 참조)
    - \*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체계적 추진 및 안정적 예산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임
  - 최근들어 수정된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 국무회의에 보고(11월 24일) 되었으나 전체 보고서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음
    - \* 기본계획의 수정 배경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디지털 사회의 가속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11월 24일자)에 따르면, 표 6에 열거된 추진과제들

- 중에서 추진이 확실시되는 것은 동의 및 고지제도 개편, 데이터 이동권 등 정보주체 권리의 법제화 방안 검토, 국외이전 관련 법제 정비의 3가지 뿐이며 다른 과제들은 확실치가 않음. 게다가 모든 추진과제의 향후 일정도 알려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법률 재개정 시점이나 추진과제의 일정에 대하여는 특정하지 않으면서 추진이 확실시되는 3가지 외에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되어 왔던 2가지를 가미하여 5가지 추진과제(① 동의 및 고지제도 개편, ② 데이터 이동권 등 정보주체 권리의 법제화 방안 검토, ③ 제재방식의 개선, ④ 특례규정 정비 및 ⑤ 국외이전 관련 법제 정비)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음

표 6 법률 재개정과 연관 있는 추진과제들

구분	추진과제	일정
과제 1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확대	동의 및 고지제도 개편	~'23년 하반기
	데이터 이동권 등 정보주체 권리의 법제화 방안 검토	~'21년 하반기
과제 6 : 개인정보 보호 법제 선진화	글로벌 법제 수준으로 개인정보 처리요건을 합리화	~'21년 하반기
	일반규정과 특례규정 간 유사·중복내용 정비로 보호법 실질적 일원화	~'21년 하반기
	책임성 강화,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한 제재방식 개선 검토	~'21년 하반기
	위험 기반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방안 연구	~'23년 하반기
과제 9.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지원 강화	국가 간 개인정보 이전 확산에 대응한 국외이전 관련 법제 정비	~'23년 하반기
	EU 적정성 결정 승인 및 유지·관리	~'23년 하반기

\* 자료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1~2023), 2020.02

## 2 추진과제별 개선 방향

- 동의 및 고지제도 개편
  -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옵트인 방식으로 원칙적으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수 있음<sup>21)</sup>(제15조 1항 및 제17조 1항). 동의 제도의 개편은 개인정보 수집과정에서 동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개선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높이자는데 그 의의가 있음

21)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에서는 동의 외에도 법적 근거, 공공업무 수행, 계약 체결 및 이행,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의 5가지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됨



- 현재 우리나라는 정보주체의 포괄적 동의를 금지하고 필수동의와 선택동의 단계를 거쳐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에서는 실질적으로 거의 ‘동의’ 만이 처리의 합법적 근거로 인정되고 있음. 그러나, 신기술 환경에서는 사전동의를 적용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정보주체가 형식적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많음(2020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참조). 이외에도 동의만 받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식의 동의 만능주의도 문제임
  - \* 2019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를 확인하지 않는 정보주체는 조사 대상자의 59.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의서를 확인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동의서 내용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해야 해서(36.7%), 확인하는 것이 귀찮고 번거로워서(33.6%), 내용이 많고 이해가 어려워서(24.6%) 순서인 것으로 조사됨
- 동의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으나, 그 개선 방향에 대하여는 의견이 서로 다름. 산업계는 사후적 동의(옵트아웃)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선호하며 시민단체들은 고지되는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가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중시함
- 정보주체가 손쉽게 이해될 수 있는 동의제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주장으로 보여지며, 그것을 넘어서서 옵트아웃을 얼마만큼 확대할 것인가는 상호 신뢰의 문제이자 안정성 확보의 문제로 보여짐. 즉, 산업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옵트아웃을 확대하는 데서 생겨나는 불안감을 사후규제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납득시켜야만 옵트아웃 확대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용이해질 것임
  - \* 급변하는 기술 및 글로벌 경쟁 환경을 고려하여 옵트아웃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 최경진은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등과 같이 중요한 정보나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이 높은 행위를 제외하고는 사전규제로서의 동의 규제를 과감히 축소하거나 처벌 없는 규제로 전환하여 보다 자유롭게 합법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사후적으로 개인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최경진, 2017.12)
  - \* 옵트아웃 확대방안으로 구태연은 ‘동의제도 선택제’를 제안하기도 하였음. 즉, 정보주체인 개인이 옵트인과 ‘포괄동의+옵트아웃’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전자신문, 2018.01.23.일자)
- 따라서 동의제도의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며, 동의제도 개편과 함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 등도 적용이 보다 용이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즉, 동의 이외에 계약의 이행, 법적의무 준수, 제3자의 생명상의 이익 보호, 공익상의 이유, 정당한 이익을 제시하고 있는 EU의 GDPR의 합법처리 기준 등을 참고하여 동의제도를 포함한 합법처리 기준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 예컨대, 정당한 이익의 경우 이러한 이익이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여야 하기 때문에 GDPR과 같이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근거가 되기는 어려움(법무법인 광장,

2019.11)

- 이외에도 동의 만능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GDPR 사례(유효 조건 4가지) 등을 참조하여 동의의 유효 조건을 보다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데이터 이동권 등 정보주체 권리의 범제화

- (데이터 이동권 도입 타당성) 데이터 이동권은 ①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과 ②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을 이미 도입한 신용정보법과의 정합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도입의 타당성이 높다고 생각됨

\* 정소영(2020.11.11. 발표)은 국내에서 마이데이터 산업이 가장 앞서 있는 분야는 금융분야와 공공 분야라고 진단하면서 두 분야의 실질적 진전은 관련 법제도(신용정보법 및 전자정부법) 개정과 때를 같이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

- (데이터 이동권의 범위) EU GDPR 사례에서와 같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체계적이면서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식으로 수령 할 수 있는 권리와 이를 다른 개인 정보처리자에게로 이전할 수 있는 권리가 둘 다 보장되는 형태가 바람직함
-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 신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제1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요구 등)를 신설<sup>22)</sup>하되, 아래의 현행 신용정보법 제33조의2를 참조하여 유사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개정된 현행 신용정보법)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4. 개인신용평가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데이터 이동권 대상 개인정보) 가장 큰 잠재적 이슈는 ‘데이터 이동권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인데, 대상 정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해야 한다는데는 큰 이견이 없을 것임. 다만, 앞서 II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문내역정보(즉, 쇼핑정보)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의 [별표 1]에 포함되어

22) 신설조항의 내용은 강원대학교(2019.12)가 제안한 제15조의2 조문 참조



논란이 된 것과 같이 유사한 사건이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으므로 신용정보법의 적용 과정에서의 경험을 참조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섹터 간의 데이터 공유 및 활용) 또 다른 문제는 동일 분야 내의 개인정보처리자 간 데이터 이동 위주에서 중장기적으로 서로 다른 분야(섹터) 간의 데이터 이동 중심으로, 즉 섹터 간 데이터 공유 및 활용으로 발전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가능하게 하는 프레임워크의 정립과 통일된 데이터 포맷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이와 관련하여서는 섹터 간의 데이터 공유 및 활용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EU의 정책 동향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 (데이터 이동권의 제한) 데이터 이동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 예컨대 데이터 이동권은 다른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공적 업무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컨트롤러에게는 행사될 수 없다는 등의 제한이 필요

- (자동화된 의사결정 반대권 도입 논의 동향) 한편,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 반대권 도입은 주로 시민단체 등에 의해 그 필요성이 주장되어 왔으며, 개정 신용정보법에서는 제36조의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가 신설되었는데, 이는 반대권이라기 보다는 대응권의 성격인 것으로 판단됨

\* 지난 20대 국회에서 진선미 의원 등에 의해 제안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주채택)은 EU GDPR을 참조하여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 반대권 등을 새로이 도입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려 하였음. 참고로 EU GDPR은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처리에만 의존하는 의사결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여(제22조 1항) 반대권임을 명확히 밝힘

(개정된 현행 신용정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자동화평가"란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의 종사자가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6조의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생략~

-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2.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 나. 자동화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 따라서 신용정보법과의 정합성 확보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최소한 신용정

보법과 유사한 수준의 대응권 정도는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또한 대응권이 아닌 반대권 형태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반대권 도입시에는 그 권리의 대상 및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해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형사벌 위주의 제재방식 개선

- 개정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법 제정 당시에 만들어진 형사벌 위주의 벌칙이 거의 그대로 잔존함으로써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간의 조화를 내세우는 개정법의 취지와는 상충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
- 또한, 형사벌 위주의 제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우선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험 있는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높은 법적 불명확성 및 입증부담에 따른 경영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소극적인 활동만을 양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게다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간의 비대칭적 처벌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유발시키게 됨
  - \* 네이버 측 담당자의 토론 발언 : “형사처벌 위험성이 크다 보니 경험 있는 인재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재능있는 인재도 이 시장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는다”(아이뉴스24, 2020.07.09.)
-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들을 참조하여 형사벌의 비중을 감소시키고 민사 및 행정벌 위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개정방향에 대해 정부 측에서도 어느 정도는 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 GDPR의 경우 행정벌로서 제83조에 의거한 과징금만 부과되며(앞서 표 2 참조) 형사처벌 부과 여부는 회원국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EU 회원국인 독일의 경우 국내에 비해 형사벌의 범위가 좁고 형량도 낮음
  - \* 일본은 시정조치 권고, 시정명령을 거쳐 불가피한 경우에만 형사벌에 처해지며 처벌 강도도 6개월 이하의 징역(2020년 개정법 : 1년 이하)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형(2020년 개정법 : 1백만엔 이하(법인은 1억엔 이하))에 처하도록 하여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이 우리나라에 비해 한결 낮음
  - \* 정부는 장기적으로 형사처벌 관련 조항을 과징금으로 바뀌어나가야 한다는 측면에 대하여는 공감한다면서도 형사처벌을 일거에 없애고 과징금 체계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ZDNetKorea, 2020.06.01.)
- 형사벌 위주의 체계에 대한 대폭적인 개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차선책으로서 양벌규정의 완화방안만이라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벌금형으로부터 면책될 수 있는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해설서 등에서는 관련 예시를 풍부하게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 양벌 규정의 적용 대상을 축소하여 개인정보 침해 중에서 정보주체에게 매우 중대하고 회복불가능한 위반 등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과 함께 정보주체의 피해회복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 가명정보·가명처리의 고의적인 재식별(제58조5의1항 위반)에 대한 제재는 특히 엄격하게 되어 있어 다른 위반에 비해 비례적이지 않고 더 과도해 보이므로 GDPR과 비교해 볼 때 형사벌을 가급적 면제 또는 축소하고 과징금 위주로만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에 대한 고의적인 재식별의 경우 전체 매출액 3%이하의 과징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였음

● 특례 규정의 정비 및 일반규정화

- 특례의 내용이 많으면 법률의 일반적 적용이라는 원칙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일반화하고 단순화시켜야 할 것임
  - \* 데이터 3법 개정은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규정(제4장 및 제재규정)을 삭제하고 유사 중복 규정들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흡수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는데, 정보통신망법에만 고유하게 존재하던 규정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제6장(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15까지)으로 이관한 것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임. 이렇게 특례 내용이 많은 이유는 개정 법률을 빨리 통과시키는데 방점을 두어 시간적으로 세세한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임
- 따라서 특례규정의 개선은 특례를 가급적 줄이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반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 불필요하므로 삭제해도 되는 조항 : 제39조의5(개인정보의 보호조치에 대한 특례), 제39조의 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제39조의14(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특례)
  - \* 특례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 조항 : 제38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제38조의9(손해배상의 보장), 제39조의11(국내대리인의 지정)
  - \* 수정·보완 또는 개편이 필요한 조항 :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제39조의13(상호주의), 제39조의15(과징금)
  - \* 특례로 존속해야 할지 일반조항으로 통합 가능한지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조항 :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제39조의7(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제39조의10(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 국외 이전 관련 법제 정비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외국사업자에게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외 적용 규정 신설과 그 집행이 원활하도록 국가간 상호 적정성 승인제도의 정비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김현경, 2020.02.18.)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위한 동의를 받는 경우, 그에 따른 위험성과 이전·활용·폐기 전 과정을 별도의 서면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된 보다 강한 형태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국외이전 정보의 목적 달성 또는 불가능한 경우와 보유·이용 기간 도과 시,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또는 폐기 등의 결과까지도 본인에의 통지의무도 계약체결 시 명확히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외이전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적법한 국외 이전 방식으로 동의를 받는 것만을 규정<sup>23)</sup>하고 있어서 동의 외의 표준계약 등 다양한 방안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EU의 GDPR 및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의 역외적용 및 국외이전 관련 사례연구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 \* EU GDPR의 경우 제46조(적절한 안전조치에 의한 이전)에서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 표준계약 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 일본은 2020년 6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서 동 법의 역외적용 및 국외이전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일본 내에 있는 외국 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의 적용 및 해외의 제3자 제공에 대한 개인정보제공시 이전 대상 사업자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하여 본인에의 정보제공의 충실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https://www.ppc.go.jp>, 2020.12.11)
  - \*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은 다국적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을 위하여 기업에서 정한 법적 구속력을 갖춘 내부 관리 규정을 의미함. 기업에서 채택한 기업규칙이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관할 감독기관의 승인이 필요함. 표준계약조항은 컨트롤러와 컨트롤러 또는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간의 개인정보 역외 이전 계약체결을 위하여 사용되는 통일된 양식의 정보 이전 조항을 의미함(한국인터넷진흥원, 2020.05)

### 3 연구 의의 및 한계점

- 본 연구의 주요 의의
  - 본 보고서는 기존 문헌들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차별화됨. 우선, 데이터 3법 하위법령 제·개정 추진 과정과 추진 과정에서의 쟁점 이슈들에 대하여 세미나, 토론회, 논문 자료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함으로써 기존 문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성도가 높고 풍부한 시각을 제공함

23) 제17조 3항 및 제39조의12 2항 모두가 동의에만 전적으로 의존



- 가장 중요한 선진 법제인 GDPR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쟁점 이슈가 되었거나 향후 추진과제에 해당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 문헌에 비해 활용도가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GDPR 시행 2주년 평가보고서, Schrems II 판결 및 일본의 2020년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같이 최신 정책 동향까지 포함시켜 서술한 점도 차별화 사항임
- 마지막으로 개정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더 선진화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향후 추진과제 5가지에 대한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도 의미 있는 차별화 사항임
- 본 연구의 주요 한계점, 발전 방향
  - 기존 문헌 고찰과 선진 법제와의 정태적인 비교를 통한 개선 방향 제시로만 국한되었기 때문에, 국가별 ICT 산업 환경 차이와 데이터 전략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보다 동태적이고 입체적인 개선 방향을 도출·제시하지 못한 점은 주요 한계점임
  - ICT 산업 비중이 높고 디지털 뉴딜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의 산업특성 및 정책 내용이 고려된, 보다 현실적인 개선 방향 제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
  - 향후 추진과제 5가지를 대상으로 종합연구를 시도하다 보니 한가지 추진과제에 초점을 맞춰 심도 있게 연구한 문헌보다는 깊이가 부족함
  - 추진과제 중에서 긴급하면서도 중요도가 높은 1~2개의 우선적인 과제에 초점을 맞춰 보다 세분화되고 적용가능성이 높은 법제연구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 국내자료

- 강원대학교, 데이터 이동권 도입 방안 연구, 2019.1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앞으로 3년간('21~'23)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청사진이 나왔다. 2020.11.2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0.09.2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2020.08.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4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2021~2023), 2020.0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캘리포니아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번역, 2018.10.05.
- 경성대학교,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정책 분석에 관한 연구, 2017.12.
- 고려대학교, EU 개인정보보호법제(GDPR) 분석 및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입법수요 연구, 2016.07.
- 고수윤, GDPR과 CCPA상 정보주체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2020.
- 관계부처 합동,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2016.12.27.
- 관계부처 합동, 데이터 3법 시행령 입법예고\_정책설명자료, 2020.03.31.
- 김진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체계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개정 데이터 3법을 중심으로,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제71회 세미나 발표자료, 2020.05.14.
- 김현경,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의 정비,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특집 세미나 '데이터 3법의 개정과 향후 입법과제 모색' 자료집, 2020.02.18.
-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블로그, 2018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의 주요 내용, 2018.08.22.
- 법무법인 광장, MyData 서비스의 개인동의 방식 개선 연구, 2019.11.
- 아이뉴스24, “개인정보 침해, 형사처벌 기준 완화해야”, 2020.07.09.
- 이규엽, 엄준현, 미국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동향 : 국내 개정법과의 비교 및 시사점, 2020.02.



- 이데일리, 마이데이터 시행령에 ‘온라인 쇼핑몰’ 직격탄 .... 업체간 유불리는?, 2020.08.20.
- 이정은,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 및 평가, 2019.04
- 이준배, 미래사회의 동맥, 데이터 활용은 어떻게?, Digital Triangle Initiative 2020 발표자료, 2020.10.23.
- 이진규, 개인정보 이동권의 취지를 다시 살펴본다, 2020.09.
- 이창범,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 시행의 함의와 전망, 2020.03.26.
- 이창범, 일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0.11.
- 장준영,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처리 허용 범위와 그 한계 : 양립가능성의 인정범위와 판단기준,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제71회 세미나 발표자료, 2020.05.14.
- 전자신문, 데이터 3법 ‘결합된 가명정보’ 반출 가능, 2020.06.16.,
- 전자신문, SK텔레콤 “개인정보 옵트아웃(사후배제) 필요하다”, 2018.01.23.
- 정소영, 국내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 2020 마이데이터 컨퍼런스 발표자료, 2020.11.11.
- 채성희, 가명정보처리의 허용 범위와 그 한계,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제71회 세미나 발표자료, 2020.05.14.
- 최경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방안, 2017.12.
- 한국인터넷진흥원, 2020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가이드북, 2020.05.
- ZDNetKorea, “폐기된 보안업계 숙원 법안, 21대 국회선 살아날까”, 2020.06.01.

## ◆ 국외자료

-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공포에 대하여, 2020.06.12.
-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개인정보보호법 신구대조표, 원문 및 영문판
-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The Court of Justice invalidates Decision 2016/1250 on the adequacy of the protection provided by the EU-US Data Protection Shield, 2020.07.16.
- EC,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2020.06.24.

EC, Data Protection as a Pillar of Citizens' Empowerment and the EU's Approach to the Digital Transition—Two Years of Application of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2020.06.24.

ITU, Assessing the Economic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2018.09.

OECD, Artificial Intelligence in Society, 2019.06.

WP29, Guidelines on consent under Regulation 2016/679, 2018.04.

WP29, Guideline on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2017.04.

<https://acompany.tech/blog/comparison-anonymization-pseudonymisation/>

<https://ec.europa.eu/>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1720180AB375](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1720180AB375)

<https://strategy.data.gov/>

[https://www.newton-consulting.co.jp/itilnavi/column/personalinfo\\_protection\\_law2020.html](https://www.newton-consulting.co.jp/itilnavi/column/personalinfo_protection_law2020.html)

<https://www.ppc.go.jp/>





---

## 저자소개

- 설성호** ETRI 지능화융합연구소 기술정책연구본부 경제사회연구실 책임연구원  
e-mail: ssh1517@etri.re.kr Tel. 042-860-6603
- 신현문** ETRI 지능화융합연구소 기술정책연구본부 경제사회연구실 책임연구원  
e-mail: hmshin@etri.re.kr Tel. 042-860-5754
- 김병일** (주)데이터앤밸류 이사/책임연구원  
e-mail: gikimo@dava.co.kr Tel. 042-489-0094

---

## 지능정보사회 대비 데이터 법제도 개선 방향

- 발행인** 이 지 형
- 발행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능화융합연구소 기술정책연구본부
- 발행일** 2020년 12월



[www.etri.re.kr](http://www.etri.re.kr)

**ETRI**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34129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TEL.(042) 860-6114 FAX.(042) 860-6504

비매품/무료



9 788955 192902  
ISBN 978-89-5519-290-2